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대학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시행, 연구윤리 실태조사〉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52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시행 ..... | 3  |
| 2. 연구윤리 실태조사 .....             | 11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 의원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4. 9.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추가 검증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각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분석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관련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15조의2),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원활

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 이를 통해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 Ⅲ. 검토의견

#### 1.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시행(안 제15조, 제20조)

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sup>1)</sup>에 대한 대학등<sup>2)</sup>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시 해당 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20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④ (생략)<br><u>&lt;신 설&gt;</u> |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br><u>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u> |

1)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2.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대학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를 말함(「학술진흥법」 제6조).

|                                                                                                                                                                                                                                                                                        |                                                                                                                                                                                                                                                                                                                                                      |
|----------------------------------------------------------------------------------------------------------------------------------------------------------------------------------------------------------------------------------------------------------------------------------------|------------------------------------------------------------------------------------------------------------------------------------------------------------------------------------------------------------------------------------------------------------------------------------------------------------------------------------------------------|
| <p>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u>지원</u>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생략)</p> <p><u>&lt;신설&gt;</u></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p> | <p><u>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u></p> <p>⑥ -----지원,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절차 등에-----.</p> <p>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p> |
|----------------------------------------------------------------------------------------------------------------------------------------------------------------------------------------------------------------------------------------------------------------------------------------|------------------------------------------------------------------------------------------------------------------------------------------------------------------------------------------------------------------------------------------------------------------------------------------------------------------------------------------------------|

현행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학등은 동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3)4)</sup>.

또한, 동 규정에 따른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을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으로 명시하고, 대학등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제27조에서는 대학등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5)</sup>.

3)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0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① 대학등은 「학술진흥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 이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제1항의 규정을 마련할 때, 대학등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연구자, 직원, 학생 등에게 적용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5.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6.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7.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8.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9.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현행법령은 대학등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을 해당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관의 자율적인 학문·연구등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sup>6)</sup>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sup>7)</sup>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고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사권한을 인정하여<sup>8)</sup>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국가의 책무를 인정하고 있음.

교육부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학술지원사업 등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sup>9)</sup>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로

---

제2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인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92헌마 68·76(병합), 2021헌마1230)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의 제1장(총칙) 및 제2장(대학등의

대학등이 자체조사가 곤란하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전문기관에게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등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0)</sup>).

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등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체검증에 따른 공정성 및 신뢰도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내실화하여 해당 행위의 근절을 도모하고 올바른 연구

---

연구윤리 확립)은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자, 대학등, 전문기관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3장(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 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10)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0조(재조사) ①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6조의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윤리를 확보하려는 점에서 개정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연구의 자율성 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대학등이 연구부정행위 처리 등 연구관리에 있어서 책임주체이고, 예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조사권한 등 책임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sup>11)</sup>,

대학등의 연구 일반에 대하여 국가의 연구부정행위 관리권한을 인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연구부정행위 확인시 연구자나 대학등에게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안 제20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제재 조치로서 개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개정안 제15조의 경우 자체연구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행법상 선정제외 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인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sup>12)</sup>.

---

11)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의견 참조

12)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등 의견]

| 구분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교육부       | ○ 대학 및 학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종전 연구윤리 검증 시스템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대학의 검증활동을 대신하는 것은 대학 및 학술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학·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 한국연구재단    | ○ 정부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연구물의 부정행위에 교육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 충돌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함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연구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학등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최소한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시행”과 관련하여 2건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

| 의안번호    | 대표발의<br>(발의일)         | 주요 내용                                                                                                                                           |
|---------|-----------------------|-------------------------------------------------------------------------------------------------------------------------------------------------|
| 2201744 | 강경숙의원<br>(2024.7.15.) |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교육부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직접 조사(전문기관 위탁 가능)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                                            |
| 2203238 | 김영호의원<br>(2023.8.27.) |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공표할 수 있고, 직권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등에 대해 사업비의 지급중지 및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 안 제19조, 제23조) |

## 2. 연구윤리 실태조사(안 제15조의2)

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의 발생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15조의2).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p> <p>④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지침으로 정한다.</p> |

현재 연구윤리 실태조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행령과 지침에 근거하여<sup>13)</sup> 매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음<sup>14)</sup>.

13)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⑥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한국연구재단, 「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2023.12.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조사는 ①(조사대상) 1년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등 총 411개교<sup>15)</sup>를 대상으로 ②(조사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③(조사방법)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항목별로 각 대학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며 ④(조사내용 및 기준) 대학의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 연구윤리 교육 및 부정행위 예방, 특수관계인 관리규정 및 현황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별로 조사를 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또한, ‘연구윤리정보포털<sup>16)</sup>’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조사·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포털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보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교육자료와 학술자료, 가이드라인 등임.

개정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특히, 현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근거하여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5) 2022년 기준(2023년 조사)

16) 연구윤리정보포털 (<https://www.cre.or.kr/>)

- 교육부는 대학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확립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내 연구윤리 정보센터를 설치함.

다만,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포함과 관련하여, 현재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도 이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구윤리 확보관련 법제 취지<sup>17)</sup> 및 대학의 자율성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안 제15조의2제4항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윤리 지침(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침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sup>18)</sup>.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관계기관 의견>

##### 【교육부】 : 일부 수정

- 현행 지침에 따른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실태조사 대상을 ‘자체연구 윤리규정 시행현황’까지 할 경우 대학의 자율적 연구활동 및 연구윤리 자정 노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17)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자체연구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자체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관련 절차 >

| 구분               |        | 연구윤리 확보 관련 절차                                             |
|------------------|--------|-----------------------------------------------------------|
| 국가<br>연구개발<br>사업 | 교육부 소관 | ·교육부장관에게 통지(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br>·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혁신법 제33조)  |
|                  | 타부처 소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혁신법 제31조)<br>·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혁신법 제33조) |
| 자체 연구 등          |        | ·자체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연구윤리 검증<br>(학술진흥법 제15조제4항)                |

18)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학술진흥법 시행령), 고등교육기관 공시 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사업 제재처분으로서의 공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의 규정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연구재단 : 신중검토

- 현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크지는 않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중검토

-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대학의 자율적인 연구부정행위 방지활동을 구속할 뿐 아니라,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제기됨.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1건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

| 의안번호    | 대표발의<br>(발의일)         | 주요 내용                                                                              |
|---------|-----------------------|------------------------------------------------------------------------------------|
| 2204455 | 서지영의원<br>(2024.9.30.) | 연구윤리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등(안 제15조의2 등)<br>* 백승아의원안과 차이(제15조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 불포함) |

문 의 처

02)6788-5185

## 【참고자료】

### 1. 학술진흥법령에 따른 「대학 윤리조사<sup>19)</sup>」 개요

#### I. 조사 목적

-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 구축,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현황 등의 체계적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윤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 추진근거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제6항

#### II. 조사 대상 및 응답 현황

- 조사 대상 :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등 총 411개교\*  
\*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기준
- 조사 기간 : 2023년 6월 27일~2023년 8월 11일(5주)
- 조사 기관 : 한국연구재단
- 조사 방법 :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항목별로 각 대학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 응답 현황

[표 1] 응답 현황

| 구분           | 대학 구분  |             | 대학 수 | 응답대학 수 |
|--------------|--------|-------------|------|--------|
| 4년제          | 대학     | 대학교         | 190  | 161    |
|              |        | 산업대학        | 2    | 2      |
|              |        | 교육대학        | 10   | 10     |
|              |        | 방송통신대학(대학)  | 1    | 1      |
|              |        | 사이버대학(대학)   | 17   | 11     |
|              |        | 기술대학        | 1    | 0      |
|              |        | 각종대학(대학)    | 2    | 1      |
|              |        | 소계(A)       | 223  | 186    |
| 전문대학 등       | 전문대학   | 전문대학(2~4년제) | 135  | 92     |
|              |        | 사이버대학(전문대학) | 3    | 2      |
|              |        | 기능대학        | 9    | 0      |
|              |        | 소계(B)       | 147  | 94     |
|              | 대학원 대학 | 일반대학원       | 1    | 0      |
|              |        | 전문대학원       | 39   | 19     |
|              |        | 특수대학원       | 5    | 2      |
|              |        | 소계(C)       | 45   | 21     |
| 대학 합계(A+B+C) |        |             | 415  | 301    |

19) 한국연구재단, 「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2023.12. 참조

### III. 조사 내용 및 기준

• 대상 기간: 2022. 1. 1. ~ 2022. 12. 31.(1년)

[표 2] 조사 내용 및 기준

| 구분                  | 항목                          | 세부 항목                                                                                                                             |
|---------------------|-----------------------------|-----------------------------------------------------------------------------------------------------------------------------------|
|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 연구윤리 규정 및 지침 현황             | 연구윤리 규정 제정 유무, 연구부정행위 범위, 검증기간, 유형별 연구부정 검증시효, 검증시효 규정, 검증시효 규정 개정 계획                                                             |
|                     |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여부, 운영횟수, 외부전문가 참여, 조사위원 구성 규정, 조사위원 규정 개정 계획                                                                       |
|                     |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 현황           |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 방법, 온라인 신고 공개동의 여부                                                                                                    |
|                     | 연구윤리 행정(담당)부서 운영 현황         | 연구윤리 행정부서, 상위 부서 위치, 설치연도, 담당인력 수, 담당자의 겸업 여부                                                                                     |
|                     | 연구윤리 활동경비 사용 현황             | 활동경비 사용 현황, 활동별 사용예산                                                                                                              |
|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판정 현황   |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판정 현황           | 학문분야, 직위, 연구부정행위 년도, 연구부정행위 유형, 연구물 유형, 판정결과, 판정에 따른 학내 처분 결과                                                                     |
| 연구윤리 교육·예방, 확산      | 연구윤리 교육 현황                  | 교육 대상, 당해연도 교육 실행 여부, 실시건수, 실시형태                                                                                                  |
|                     | 표절예방현황                      | 문장 유사도(표절) 검색 프로그램 사용여부, 석박사학위 논문 제출시 프로그램 의무 활용여부, 프로그램 명칭                                                                       |
|                     | 연구부정행위 예방 활동 현황             |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서약서 제출, 교육이수증 제출, 문장 유사도 검색 결과지 제출,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교육 강화, 내외부 연구과제 수행 전 연구참여자 대상 서약서 및 교육 이수증 제출, 연구윤리 상담 및 자문부서 운영 |
|                     | 정부 연구윤리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활용 현황  | 정부 연구윤리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활용 여부,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활용 형태                                                                                     |
| 특수관계인 관리 규정 및 관리 현황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관리 근거 규정 마련 유무 | 제정연도, 근거 규정·지침 명칭 및 조항, 연구 참여 전 신고, 연구 수행 중 관리 사항 안내, 공동연구 성과발표 전 신고, 공동연구 성과물 DB 관리, 근거규정 제정 중 또는 제정안함 유무                        |

### IV. 조사·분석의 한계

- 대학 연구윤리활동 실태조사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조사·분석 상의 한계가 있음
  - 조사 세부항목별로 미응답 대학이 있을 수 있으며, 응답대학 수는 분석 내용 및 통계표 등에 표기
  -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으나, 전수 회수의 한계로 전년 분석 자료와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음
  - 대학 작성자의 작성기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정확한 자료 입력 가능성 있음